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消防施設工事業法施行令

〔일부개정 2007.1.24 대통령령〕

제 19846 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4>

第 1 条(目的) この令は、「消防施設工事業法」で委任された事項とそ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改正 2007.1.24>

제 2 조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 과 같다.<개정 2007.1.24>

第 2 条(消防施設業の登録基準および営業範囲) 消防施設工事業法(以下"法"という。)第 4 条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業の業種別登録基準および営業範囲は、別表 1 のとお。<改正 2007.1.24>

제 2 조의 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第 2 条の 2 (性能中心設計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の範囲) 法第 11 条第 2 項による性能中心設計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は、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新築建築物をいう。

1. 연면적 20 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 8 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1 延面積 20 万㎡以上である特定消防対象物。ただし、「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別表 2 第 8 号アのアパートを除く。

2. 건축물의 높이가 100 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 8 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建築物の高さが 100m 以上である特定消防対象物(地階を含んだ階数が 30 階が以上である特定消防対象物を含む。)。ただし、「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別表 2 第 8 号アのアパートを除く。

3. 연면적 3 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 4 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

3 延面積 3 万㎡以上である「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別表 2 第 4 号オおよびカの鉄道駅舎、空港施設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본조신설 2007.1.24]

4 一つの建築物に「映画およびビデオ物の振興に関する法律」第2条第10号による映画上映館が10個以上である特定消防対象物。<本祖神説 2007.1.24]

제2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7.1.24]

第2条の3 (性能中心設計ができる者の資格等) 法第11条第3項による性能中心設計ができる者の資格技術人力および資格による設計範囲は、別表1の2のとおり。<I 本祖神説 2007.1.24]

제3조 (소방기술자의 배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第3条(消防技術者の配置) 法第4条第1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工事業の登録をした者(以下"工事業者"という。)は、法第12条第2項の規定によって別表2の基準による所属消防技術者を消防施設工事現場に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 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1.24>

第4条(消防施設工事の着工申告対象) 法第13条第1項で「大統領令が定める消防施設工事」とは、次の各号の1に該当する消防施設工事をいう。<改正 2007.1.24>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1 新築、増築、改築、再築、大修繕または構造、用途変更される特定消防対象物(「危険物安全管理法」第2条第1項第6号の規定による製造所などを除く。以下第2号および第3号で同じ。)に、次の各目の1に該当する設備を新設する工事

가.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정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 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ア 屋内消火栓設備、屋外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消火設備、泡消火設備、二酸化炭素消火設備、ハロゲン化合物消火設備、クリーン消火薬剤消火設備および粉末消火設備(以下!"水噴霧等消火設備"という。)、連結送水管設備、連結散水設備、排煙設備(消防用以外の用途と兼用される排煙設備を「建築産業基本法施行令」別表1の規定による機械設備工事業者が工

事する場合を除く。)、消火用水設備(消火用水設備を「建設産業基本法施行令」別表1の規定による機械設備工事業者または上、下首都設備工事業者が工事する場合を除く。)または燃焼防止設備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 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イ 自動火災報知設備、非常警報設備、非常放送設備(消防用以外の用途と兼用される非常放送設備を「情報通信工事業者法」による情報通信工事業者が工事する場合を兼ねる。)、非常コンセント設備(非常コンセント設備を「電気工事業者法」による電気工事業者が工事する場合を除く。)または無線通信補助設備(消防用以外の用途と兼用される無線通信補助設備を「情報通信工事業者法」による情報通信工事業者が工事する場合を兼ねる。)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2 増築、改築、再築、大修繕または構造、用途変更される特定消防対象物に、次の各目の1に該当する設備または区域などを増設する工事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ア 屋内・屋外消火栓設備

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 1 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イ 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または水噴霧等消火設備の防護区域、自動火災報知設備の警戒区域、排煙設備の排煙口、連結散水設備の散水区域、連結送水管設備の送水口域、非常コンセント設備の専用回路、燃焼防止設備の散水区域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I 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들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는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하지 않을 수 있다.

3 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された消防施設等を構成する次の各目の1に該当するもの全部または一部を交替したり補修する工事。ただし、消防施設を作動させるものではない故障または破損などによって消防施設を緊急に交替または補修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は、申告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がある。

가' 수신반

ア 受信盤

나. 소화펌프  
イ 消火ポンプ

나. 동력(감시)제어반  
ウ 動力監視制御盤

제 5 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 14 조 제 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第 5 条(完工検査のための現場確認対象特定消防対象物の範囲) 法第 14 条第 1 項ただし書で「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とは、特定消防対象物中、次の各号の対象物をいう。

1.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 1 青少年施設、老幼子施設、文化集会および運動施設、販売施設、宿泊施設、地下商店街、多重利用業者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젠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전문개정 2007.1.24>
    - 2 ガス系(二酸化炭素・ハロゲン化合物・クリーン消火薬剤)消火設備が設置されるもの[専門改正 2007.1.24]

제 6 조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법 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할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第 6 条(過失補修対象消防施設と過失保証期間) 法第 15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過失補修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施設と消防施設別過失補修保証期間は、次の各号のとおり。

1. 피난기구·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1 避難器具、誘導灯、誘導標識、非常警報設備、非常照明灯、非常放送設備および無線通信補助設備 : 2年
  2.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쿨러설비·간이스프링쿨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들 제외한다) : 3년
    - 2 自動式消火器、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等消火設備、屋外消火栓設備、自動火災報知設備、上水道消火用水設備および消火活動設備(無線通信補助設備を除く。) : 3年

제 7 조 (하자보수의 이행보증) 파법 제 1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 6 조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

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条(過失補修の履行保証) ① 法第15条第2項の規定によって工事業者は、第6条各号の1に該当する消防施設が設置される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過失補修の履行を保証する証書を預け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契約金額(建築物対象の建築物現黄桃に表示された敷地境界線の中の地域の消防施設等の工事を統一した工事業者が2回以上分けて契約した場合には、これを合わせた金額をいう。)が5百万ウォン以下である消防施設等の工事を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竝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法第15条第2項の規定によって金融機関に預け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過失補修保証金は、消防施設工事金額の100分の3以上とする。

제8조 (감라업자가 아년 자가 감라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쌍물의 시공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07.1.24>

第8条(監理業者が女子供に検査することができる保安性などが要求される消防対象物の施工場所) 法第16条第2項で「大統領令が定める場所」とは、「原子力法」第2条第10号の規定による関係施設が設置される場所をいう。<改正 2007 ‘1.24>

제9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3과 같다.

第9条(消防工事監理の種類と方法) 法第16条第3項の規定による消防工事監理の種類および方法は、別表3のとおり。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개정 2007.1.24>

第10条(工事監理者指定対象特定消防対象物の範囲) 法第17条第1項本文で「大統領令が決める特定消防対象物」とは、次の各号の1に該当する特定消防対象物をいう。<犬本當に 2007.1.24>

1.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1 延面積(「建築法施行令」第119条第1項第4号の規定によって算定した面積をいう。以下同じ。)1千㎡以上の特定消防対象物。ただし、増築、改築、再築、大修繕または構造、用途変更によって、次の各目に該当する消防施設を追加的に設置する特定消防対象物を除く。

가. 소화설비:수몽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ア 消火設備:手動式消火器、自動式消火器または簡易消火用具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イ 非常警報設備 : 非常ベル設備または自動式サイレン設備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ウ 単独警報型感知器

라. 비상방송설비

エ 非常放送設備

마. 누전경보기

オ 漏電警報機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カ 自動火災通報設備

사. 가스누설경보기

キ ガス漏洩警報機

아. 피난설비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 완강기·피난교·피난맛줄 공기안전매트·방열복 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유도등 유도표지·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ク 避難設備 : 滑り台、避難はしご、救助袋、緩降機、避難橋、避難ロープ、空気安全マット、防災服、空気呼吸器、人工蘇生器、誘導灯と誘導標識、非常照明灯または携帯用非常照明灯

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들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들 제외한다'

2 自動火災報知設備、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等消火設備または排煙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ただし、地下溝を除く。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3 長さが1000m以上である地下溝。ただし、第1号各目に該当する消防施設を設置するものを除く。

제 11 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법 제 1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려업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第 11 条(消防工事監理員の配置地基準) 法第 18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監理業者は、別表 4 の基準により該当所属監理員を消防施設工事現場に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2 조 (소방시절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1)법 제 1122 조제 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1.24>

第 12 条(消防施設工事の施工を下請請負できる場合) ① 法第 22 条第 1 項ただし書で「大統領令が定める場合」とは、消防施設工事業と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事業を一緒にする消防施設工事業者が消防施設工事と該当する事業を請け負った場合をいう。<改正 2007.1.24>

1. 주택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1 「住宅法」第 9 条の規定による住宅建設事業
2.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2 「建設産業基本法」第 9 条の規定による建設業
3. 「전기공사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3 「電気工事業法」第 4 条の規定による電気工事業
4. 정보통신공사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4 「情報通信工事業法」第 14 条の規定による情報通信工事業

2) 법 제 22 조제 1 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라 함은 제 4 조제 1 호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② 法第 22 条第 1 項ただし書で「請負受けた消防施設工事の一部」とは、第 4 条第 1 号各目の 1 に該当する消防設備の中の一つ以上の消防設備を設置する工事をいう。

제 13 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파법 제 30 조제 1 항제 5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1.24>

第 13 条(消防技術審議委員会の審議事項) ① 法第 30 条第 1 項第 5 号で「大統領令が定める事項」とは、次の各号の事項をいう。<改正 2007.1.24>

1. 연면적 10 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관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1 延面積 10 万㎡以上の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された消防施設の設計、施工監理の瑕疵有無に関する事項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2 新しい消防施設と消防用機械器具等の導入の有無に関する事項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その他消防技術と関連して消防防災庁長が審議に送る事項

: 법 제 30 조제 2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1.24>

② 法第 30 条第 2 項第 2 号で「大統領令が定める事項」とは、次の各号の事項をいう。<改正 2007.1.24>

1. 연면적 10 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 하자 여부에 관한 사항

- 1 延面積 10 万㎡未満の特定消防対象物の消防施設の設計、施工、監理の欠陥の有無に関する事項
-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2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が火災安全基準または危険物製造所等の施設基準の適用に関して技術検討を要請する事項
-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3 その他に消防技術と関連して特別市長、広域市長、道知事または特別自治道知事(この項"市・道知事"という。)が審議に付する事項

제 14 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CD 법 제 30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1 인으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第 14 条(消防技術の委員会の構成等) ① 法第 30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中央消防技術審議委員会(以下"中央委員会"という。)の委員は、委員長を含んで 21 人で、地方消防技術審議委員会(以下"地方委員会"という。)の委員は、委員長を含んで 5 人以上 9 人以下の委員で構成する。

C2'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中央委員会は、分野別小委員会を構成、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中央委員会および地方委員会の委員中、公務員でない者の任期は、2 年として、公務員である者の任期は、当該職位に在職している期間の間とする。ただし、補欠委員の任期は、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제 15 조 (위원의 임명·위촉) (1)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4>

第 15 条(委員の任命、委嘱) ① 中央委員会の委員は、局長級職位以上の消防公務員と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中で、消防防災庁長が任命または委嘱する。 <改正 2007.1.24>

### 1. 소방기술사

1 消防技術者

### 2.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2 修士以上の消防関連学位所持者



### 3. 소방시설관리사

3 消防施設監理者

### 4.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消防関連法人、団体に消防関連業務に5年以上従事した者

###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消防公務員教育機関、大学校または研究所で消防に関連した教育または研究に5年以上従事した者

2)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地方委員会の委員は、当該特別市広域市または道所属消防公務員と第1項各号の1に該当する者中で、市・道知事が任命または委嘱する。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7.1.24>

③ 中央委員会の委員長は消防防災庁長が、地方委員会の委員長は市・道知事が、委員中から委嘱する。<改正 2007.1.24>

제 16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1)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第 16 条(委員長および委員の職務) ① 中央委員会および地方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の委員長は、委員会の会議を招集してその議長になる。

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들 대리한다

② 委員長がやむをえない理由で職務を実行できない時には、委員長が指定した委員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제 17 조 (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합고인·감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 17 条(委員会の調査活動等) ① 委員会は、審議と関連して必要な時には、関係人、申告人または鑑定人を出席するようにして陳述または鑑定するにしたり、必要な文書または物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し、委員会の委員によって関連施設または書類を調査、連絡するに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関係人、申告人、鑑定人は、特別な理由がない限り調査に同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消防署長は、委員会の業務遂行に必要な調査または書類の閲覧等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8 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第 18 条(委員の手当) 委員会の委員には、予算の範囲内で出席および調査研究手当てを支給できる。

제 19 조 (운영세칙) (1)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07.1.24>

第 19 条(運営細則) ① この令で定めたことの他に、委員会の運営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消防防災庁長または市・道知事が定める。<改正 2007.1.24>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7.1.24>

② 消防防災庁長または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運営細則を制定または決定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あらかじめ委員会の意見を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24>

제 20 조 (업무의 위탁)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3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 2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07.1.24>

第 20 条(業務の委託) ① 消防防災庁長は、法第 33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法第 29 条の規定による消防技術者実務教育に関する業務を「消防基本法」第 40 条の規定による韓国消防安全協会または法第 29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庁長が指定する実務教育機関に委託する。<改正 2007.1.24>

(강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1133 조제 113 항에 따라 법 제 1126 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07.1.24>

② 消防防災庁長は、法第 33 条第 3 項により法第 26 条による施工能力評価および公示に関する業務を、消防技術に関連した法人として消防防災庁長の許可を受けて設立された法人に委託する。この場合、消防防災庁長は、受託機関の名称、住所、代表者および委託業務内容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24>

[5]1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33 조제 4 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③ 消防防災庁長は、法第 33 条第 4 項により消防技術に関連した資格、学歴および経歴の認定業務を消防技術に関連した法人として消防防災庁長の許可を受けて設立された法人に委託する。この場合、消防防災庁長は、受託機関の名称、住所、代表者および委託業務内容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24>

제 21 조 (과태료 부과)(1)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 4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 21 条(過怠金賦課) ① 市・道知事、/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以下この条で”賦課権者”という。)は、法第 40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過怠金を賦課する時には、当該違反行為を調査、確認した後、違反事実、過怠金金額、異議方法および異議期間等を書面で明示してこれを納付することを過怠金、処分対象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강)부과권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7.1.24>

② 賦課権者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過怠金を賦課しようとする時には、10 日以上 の期間を定めて、過怠金、処分対象者に口述、書面または電子文書による開陳の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指定された期日まで開陳がない時には、意見がないものと見なす。<犬本当に 2007.1.24>

GD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③ 賦課権者は、過怠金の金額を定めるということにおいては、当該違反行為の動機とその結果等を参酌するものの、その賦課基準は、別表 5 のとおり。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過怠金の賦課、徴収手続き等に関する細部基準は、行政自治部令に定める。

부칙 <제 18405 호, 2004.5.29>

제 1113': (시행일) 이 영은 2004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소방공사감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 10 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제1133':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D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2004 년 12 월 30 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급소방시설설계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2 급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
3 급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
1 급소방시설감리업	전문소방시설감리업
2 급소방시설감리업	일반소방시설감리업
3 급소방시설감리업	일반소방시설감리업

;강)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일반소방 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보조기술인력을 2004 년 12 월 30 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제 4 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 41 조의 4 및 별표 8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 46 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 6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 59 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

소방안전협회”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 〃  
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6호, 2007.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

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별표 1 부표 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소방업무경력 연  
장에 따른 상위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별표 1] <개정 2007.1.24>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 2 조관련)  
 消防施設業の業種別登録基準および営業範囲(第 2 条関連)

1.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消防施設設計業の登録基準および営業範囲

항목		기술인력 技術人材	영업범위 営業範囲
업종별			
전문소방시설 설계 업 専門消防施設設計業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ア 主な技術人材:消防技術士 1人以上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イ 補助技術人材:2人以上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すべての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される消防施設の設計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機械分野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 분야 電気分野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ア 主な技術人材:消防技術者または電気分野消防設備技術者 1人以上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イ 補助技術人材:2人以上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ア アパートに設置される電気分野消防施設の設計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イ 延面積 30000 m <sup>2</sup> (工場の場合には 10000 m <sup>2</sup> )未滿の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される電気分野消防施設の設計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ウ 危険物製造消等に設置される電気分野消防施設の設計

비 고 備考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1 上の表の一般消防施設設計業において、機械分野および電気分野の対象になる消防施設の範囲はも次の各目のとおり。

가. 기계분야

아 機械分野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1) 消火器具、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等消火設備、屋外消火栓設備、避難器具、上水道消火用水設備、消火水槽、貯水槽、排煙設備、連結送水管設備、連結散水設備および燃焼防止設備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2) 機械分野消防施設に付設される電気施設。ただし、非常電源、動力回路、制御回路、機械分野消防施設を作動するために設置する火災感知器による火災感知場および電気信号による消防施設の作動装置を除く。

## 나. 전기분야

### 이.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1) 非常警報設備、非常放送設備、漏電警報機、自動火災報知設備、視覚警報機、自動火災通報報設備、ガス漏洩警報機、総合監視施設、誘導灯、誘導標識、非常照明灯、携帯用非常照明灯、非常コンセント設備および無線通信補助設備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機械分野消防施設に付設される電気施設中、ア(2)ただし書の電気施設

2.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一般消防施設設計業の機械分野および電気分野を一緒にする場合、主な技術人材は、消防技術者または機械分野消防設備記事と電気分野消防設備技士資格を共に取得した者1人以上にできる。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갓출 수 있다.

3 消防施設設計業と消防施設監理業または消防施設設計業と消防施設工事業を共にする場合、主な技術人材は、次の各目のどれか一つの基準により備えることができる。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아. 専門消防施設設計業と消防施設監理業を一緒にする場合:消防技術士資格と消防施設管理社資格を共に取得した者1人以上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

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이. 専門消防施設設計業と専門消防施設工事業を一緒にする場合:消防技術者資格を取得した者1人以上



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기계분  
야  
또는  
전기분  
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ウ 一般消防施設設計業と消防施設管理業を一緒にする場合:機械分野または  
電気分野消防設備記事資格と消防施設管理社資格を共に取得した者 1人以  
上

소방기  
술사자  
격

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  
인 이상

エ 一般消防施設設計業と一般消防施設工事業を一緒にする場合:消防技術者資格を取  
得したり、機械分野または電気分野消防設備記事資格を共に取得した者 1人以上

4. "보조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補助技術人材"は、次の各目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者をいう。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ア 消防設備記事または消防設備産業技士資格を取得した者

나.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イ 「高等教育法」第 2 条第 1 号から第 6 号までの規定中どれか一つに該当  
する学校で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消防関連学科を卒業した者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자

ウ 消防公務員で在職した経歴が 3 年以上である者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エ 消防防災庁長が決めて告示する消防技術に  
関連した資格、経歴および学歴を備えた者

5. 위 표 및 제 2 호에 불구하고

「엔지  
니어링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기술진 엔지니  
흥법」

어령활동주체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 23 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함

께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에 한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上の表および第2号にかかわらず、「エンジニアリング技術振興法」第4条第1項によるエンジニア申告または「建築会社法」第23条による建設事業無申告をしたり、「技術士法」第6条第1項による技術士事務所登録をしたり、自家消防施設設計業をする場合には、「エンジニアリング技術振興法」、「建築会社法」および「技術士法」による技術人材基準(主な技術人材に限る。)などが上表の登録基準と重複する時には上の表意登録基準に適合したと見なす。

2. 소방시설공사업 2.消防施設工事業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장비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 기사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가. 법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장비 : 부표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가. 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장비 : 부표의 기계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가. 법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장비 : 부표의 전기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분야

소방설비 기사  
1인 이상

가액 1억원 이상

한다.

에 설치되는 전  
기분야 소방시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설의 공사·개설· 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 시설의 공사·개 설·이전·정비
--	--------------------	--	--

비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 1호 각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인으로 하고, 장비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 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갖추 수 있고, 두 업종의 중복되는 장비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기술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 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 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인
6. "개설"이라 함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

기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표] <개정 2007.1.24>

장비

기계분야			전기분야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하론농도측정기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DC 500V(최소눈금이 0.1MΩ이하인 것)	1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1			
전류전압측정기		1			
풍속계	0~10 m/s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	1	전류전압측정기		1
음량계		1	열감지기시험기		2
차압계		1	연기감지기시험기	최소 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2
방수압력측정기	1	조도계	1		
(방수량측정기를 포함한다)			음량계		1
봉인렌치	DC 500V(최소눈금이 0.1MΩ이하인 것)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1			
열감지기시험기		1			
연기감지기시험기		1			

비 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 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 1 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해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항목		기술인력	장 비	영업범위
업종별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인 이상	장비 : 부표 같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분야	가.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장비 : 부표 1과 같다.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소방시설(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
	전기	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인	장비 : 부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p>이상</p> <p>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p> <p>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p>	<p>표 1 과 같</p> <p>다.</p>	<p>(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p> <p>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p> <p>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p>
--	--	--------------------------	---

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소방감리원", "고급소방감리원", "중급소방감리원" 및 "초급소방감리원"은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인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 3 호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 23 조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 28 조제 1 항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또는 「기술사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기

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 또는 장비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있어서 기준 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위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표 1]

장 비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 계 분 야			전 기 분 야		
장비명	규 격	수 량	장비명	규 격	수 량	장비명	규 격	수 량
수압기	20 kg f/cm <sup>2</sup>	1	수압기	20 kg f/cm <sup>2</sup>	1	전류전압		1
하론농도		1	하론농도		1	측정기		
측정기			측정기			음량계		1
이산화탄소		1	이산화탄소		1	초시계		1
농도측정기			농도측정기			전기절연	DC 500V	1
전류전압		1	전류전압		1	저항시험기	(최소눈금이 0.1 MΩ 이하인 것)	
측정기			측정기			열감지기		1
검량계	200 kg f	1	검량계	200 kg f	1	시험기		
풍압풍속계	1~10 mm Hg	1	풍압풍속계	1~10 mm Hg	1	연기감지기		1
	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것			의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것		시험기		
차압계		1	음량계		1	조도계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1
음량계		1	초시계		1			
초시계		1	방수압력		1			
방수압력		1	측정기					
측정기			봉인렌치		1			
봉인렌치		1	포채집기		1			
포채집기		1	방출포량		1			
방출포량		1	시험기					



시험기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DC 500V (최소 눈금 이 0.1 MΩ 이하인 것)	1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DC 500V (최소 눈금 이 0.1 MΩ 이하인 것)	1		
열감지기 시험기		1	열감지기 시험기		1		
연기감지기 시험기	최소 눈금이 0.1Lux 이 하인 것	1	연기감지기 시험기		1		
조도계 시험기	0.1Lux 이 하인 것	1	시험기		1		

비 고

1. 감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부표 2] <개정 2007.1.24>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구 분	기술자격기준
특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소 방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감리원	수행한 자
초급 소방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 2조제 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 3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비 고

1. "소방 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50 퍼센트의 범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
  - 나.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동의·소방검사·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5조제 1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업체·전기공사업체·기계설비공사업체에서 근무 기간 중 수행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2. "소방 관련 학과"라 함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의 2] <신설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 2 조의 3 관련)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p>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가. 법 제 4 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p> <p>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p>	<p>소방기술사 2인 이상</p>	<p>제 2 조의 2 와 같다.</p>

[별표 2] <개정 2007.1.24>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 3 조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 기계분야의 소방설비  
경우  
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가.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
  - 나. 포소화설비의 공사
  -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  
화설비의 공사
  - 라.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  
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  
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 전기분야의 소방설비  
경우  
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 나.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
  - 다.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 라.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제 1 호 마목 단서의 전기시설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  
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방기  
술자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4. 공사업자는 1인의 : 2 개의 : 5 천 제곱미터 미만인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연면적이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 나.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사업자가 공시하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 9 조 관련)

종류	대 상	방 법
상 주 공 사 감 리	<p>가. 연면적 3 만 제곱미터 이 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 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 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 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 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 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 사는 제외한다.</p> <p>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 층 이상으로서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 시설의 공사</p>	<p>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 리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 16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1 항제 9 호에 따른 업무는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 우만 해당한다.</p> <p>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 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 일 이상 현장을 이 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 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p> <p>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 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 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배치되 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 는 소방시설의 공사</p>	<p>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 16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만, 법 제 16 조제 1 항제 9 호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p>

일 반  
공 사  
감 리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4] <개정 2007.1.2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제 11 조관련)

1. 연면적 20 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 3 호 2 에 따른 특 부표  
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 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이 3 만 제곱미터 20 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 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 층 40 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 3 호 2 에 따른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 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 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 3 호 2 에 따른 고급감 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 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연면적 5 천 제곱미터 3 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 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 3 호 2 에 따른 중 부표 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 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 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 별표 1 제 3 호 부표 2 에 따른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 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의 경우 : 별표 1 제 3 호 2 에 따른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 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제 21 조제 3 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 2 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 분 1 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의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 6 조, 제 7 조제 3 항, 제 13 조제 1 항 및 제 17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1 차 위반시 (2) 2 차 위반시 (3) 3 차 위반시	법 제 1 호	50 100 200
나. 법 제 8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증제,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1 차 위반시 (2) 2 차 위반시 (3) 3 차 위반시	법 제 2 호	50 100 200
다. 법 제 8 조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 3 호	200
라. 법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 4 호	200
마. 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받지 아니한 자	법 제 5 호	200
바. 법 제 15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 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법 제 6 호	200
사. 법 제 15 조제 6 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하자보수내용을 알리	법 제 7 호	200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아. 법 제 17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서	법 제 40 조제 1 항	200
자. 법 제 19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 차 위반시 (2) 2 차 위반시 (3) 3 차 위반시	법 제 9 호	50 100 200
차.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결과의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법 제 10 호	200
카. 법 제 2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 1 차 위반시 (2) 2 차 위반시 (3) 3 차 위반시	법 제 11 호	50 100 200
타. 법 제 2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1 차 위반시 (2) 2 차 위반시 (3) 3 차 위반시	법 제 12 호	50 100 200
파. 법 제 2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함께 수행한 자	법 제 13 호	200